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23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17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14년 10월 22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재정국장 이 철 호)

가. 제 안 이 유

○ 성 평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상환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 요청

나. 주 요 내 용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13년도말 현재액 ⓐ	기 정 액		변 경 액		2014년도말 현재액 ⓓ=ⓐ+ⓑ-ⓒ	증 감 액 ⓔ=ⓓ-ⓐ
		수 입	지 출	수 입 ⓑ	지 출 ⓒ		
성평등기금	948,083	21,568	0	21,568	29,870	939,781	△8,302

3. 專門委員**의** 檢討報告 要旨 **(전문위원 : 이 태 선)**

○ 성 평등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과
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
2013년도말 조성액은 9억 4,800만원이고 2014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
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9억 3,970만원으로 830만원 감소가 예상됨.

○ 지출 계획은 당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기금 예치금 3,000만원에서
여성 복지센터 환경개선비 등 3,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
예산의 증감사항은 변동없으며
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 可決

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제 23 호

제출연월일 : 2014 10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사유

○ 성 평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상환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결 요청

2.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13년도말 현재액 ⓐ	기 정 액		변 경 액		2014년도말 현재액 ⓓ=ⓐ+ⓑ-ⓒ	증 감 액 ⓔ=ⓓ-ⓐ
		수 입	지 출	수 입 ⓑ	지 출 ⓒ		
성평등기금	948,083	21,568	0	21,568	29,870	939,781	△8,302

첨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부. 끝.